

팜스코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Supply Chain Sustainability Management Policy

1. 제정 목적

(주)팜스코(이하 “당사”)는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등 당사와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협력사(이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윤리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정책을 수립한다.

본 정책은 단순한 협력사 행동 기준의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내 위험을 실제로 식별·평가·완화·모니터링하는 일련의 실사(Due Diligence) 프로세스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다.

2. 적용 범위 및 정의

2.1 적용 대상

본 정책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음의 전체 협력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공급업체: 원료, 부재료, 포장재 등을 당사에 납품하는 업체
- 하도급업체: 당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정·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 유통업체: 당사 제품의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 기타 당사와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직·간접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2.2 용어의 정의

가. 공급망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등 평가대상기업과 일정 기간 지속이 예상되는 유의미한 직·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와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나.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정책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대응하기 위한 당사의 목표, 방향성, 관리체계를 규정한 본 정책을 말한다.

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이하 “실사”)

위험 식별, 평가, 완화조치 수립 및 모니터링의 전 과정을 의미하며, 실사 실행조직, 주요 리스크 식별·모니터링 메커니즘 등을 포함한다.

3. 추진 체계 및 실사 주관조직

3.1 주관조직

경영진단팀은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전반을 총괄·주관하는 조직으로서, 실사 계획 수립, 협력부서(영업, 구매, 생산, 품질관리 등) 협조 요청, 실사 결과 분석 및 경영진 보고, 완화조치 이행 점검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3.2 협조체계

경영진단팀은 다음 부서와 협력하여 실사를 수행하며, 각 부서는 관할 영역의 협력사 정보 제공 및 현장 확인에 협조한다.

- 구매·자재 부서: 신규/기존 협력사 계약정보, 거래내역 제공
- 생산·품질관리 부서: 원료·부재료 협력사의 품질·안전 관련 현장정보 제공
- ESG·지속가능경영 담당 부서: 협력사 ESG 데이터 및 공시자료 연계

3.3 보고체계

실사 결과 및 주요 위험사항은 경영진단팀이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에 보고하며, 중대한 위험이 식별된 경우 즉시 보고한다.

4.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위험 식별 → 위험 평가 → 완화조치 → 모니터링"의 4단계로 구성된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4.1 실사 주기 및 범위

구분	내용
실사 주기	정기 실사: 연 1회(매년 1분기) 전체 협력사 대상 정기 실사 실시 수시 실사: 신규 거래 개시 시, 중대 이슈(민원·제보·법규위반 등) 발생 시 별도 수시 실사 실시
실사 대상	당사와 거래 중인 전체 협력사(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유통업체). 다만 거래규모,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실사 또는 전체실사로 구분 운영 가능
실사 주관	경영진단팀(주관), 구매·생산·품질관리·기타 담당 부서(협조)

구분	내용
실사 방법	서면실사(체크리스트·자가진단서 제출), 시스템 데이터 분석(거래데이터·계약 데이터 분석), 현장점검(필요시 표본 협력사 방문), 인터뷰(이해관계자 면담)를 병행 실시

위 표의 실사주기·주관조직·범위·방법은 본 정책이 규정하는 최소 정보이며, 세부 일정 및 절차는 「공급망 실사 운영지침」(내부 규정)에 따른다.

4.2 1 단계 – 위험 식별

경영진단팀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공급망 내 잠재적 위험을 식별한다.

- 1) 거래데이터 분석: 계약관리시스템 및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 결제조건, 거래빈도 등의 이상치를 분석하여 위험 신호를 선별한다.
- 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협력사로부터 환경·사회·윤리 분야 자가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1차 위험요인을 선별한다.
- 3) 외부 제보·민원 채널 점검: 신고센터, 협력사 고충처리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을 위험 식별 정보로 반영한다.
- 4) 위험 영역: 노동·인권(강제노동, 임금체불 등), 환경(폐기물, 오염물질 배출 등), 안전·보건, 공정거래(불공정 계약조건, 대금 미지급 등), 정보보호 등을 식별 대상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4.3 2 단계 – 위험 평가

식별된 위험요인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한다.

- 1) 평가 기준: 위험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영향도(피해규모·이해관계자 영향범위)를 각각 상·중·하로 평가하여 매트릭스 방식으로 종합 위험도를 산정한다.
- 2) 등급 분류: 종합 위험도에 따라 협력사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 단계로 분류한다.
- 3) 고위험군 협력사는 현장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하며, 필요시 전문가(외부 자문) 검토를 병행한다.

4.4 3 단계 – 완화조치

평가 결과 위험이 확인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 1) 개선요구서 발송: 위험사항과 개선기한을 명시한 개선요구서를 협력사에 발송한다.
- 2) 개선계획 협의: 협력사와 협의하여 구체적 개선계획 및 일정을 수립한다.
- 3) 이행지원: 필요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협력사의 개선 이행을 지원한다.

- 4) 거래조건 반영: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험이 확인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거래조건 재검토 또는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4.5 4 단계 – 모니터링

완화조치의 이행 여부 및 효과성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1) 이행점검: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 실사 주기(연 1 회) 내 추적 점검하며, 고위험군은 반기 1 회 별도 점검한다.
- 2) 재평가: 개선조치가 완료된 협력사는 차기 정기 실사 시 재평가하여 위험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 3) 경영보고: 모니터링 결과는 경영진단팀이 종합하여 경영진에 정기 보고하며,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

5. 정책 공개 및 개정

5.1 공개 채널

본 정책은 다음의 공식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 사업보고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당사 공식 홈페이지

5.2 개정

본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 경영환경 변화, 실사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경영진단팀이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한다.

부칙

본 정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